



2025. 3. 5.(수) 실시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사무 일정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 3. 5.(수) 실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 일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새마을금고정관(예)」는 “정관”으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규
'24. 9. 1.까지	일	해당 금고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관할위원회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규§3②
9. 21.	토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위탁단체	임기만료일전 180일	법§8
9. 21.부터 '25. 3. 5.까지	토 수	기부행위제한	후보자(예정자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위탁신청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1회 이사장선거에만 적용	법§34 법§35 부칙(23. 8. 8.) 제2조
9. 22.까지	일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위탁단체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규§3②
'25. 1. 15.까지	수	해당 금고 회원명부 정비	위탁단체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전 30일까지	법§15④
1. 21.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법§24의2①
2. 14.부터 2. 18.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위탁단체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2. 17.까지	월	입후보하는 임·직원 등 사직기한 해당 금고의 임·직원, 다른 금고의 임·직원 및 대의원, 공무원의 사직기한(단, 선출직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고 적용 제외) ※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대상 아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정관§39
2. 18.부터 2. 19.까지	화 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2. 19.부터 2. 21.까지	수 금	선거인명부 열람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16①
2. 20.	목	선거기간개시일			법§13
2. 22.까지	토	선거공보(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제출서),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25①·§26①
2. 23.	일	선거인명부 확정	위탁단체	선거일전 10일	법§15①
2. 2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규§18①
2. 25.까지	화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동봉)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법§25③ 법§43
2. 28.까지	금	개표소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규§25①·②
3. 3.까지	월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3. 4.까지	화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3. 5.	수	투·개표		투표시간 : 오전 7시부터 (협의시간) 오후 5시까지	법 제8장
4. 4.까지	금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관할위원회	선거일후 30일까지	규§44②

2025. 3. 5.(수) 실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세부 일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공직선거법」은 “공선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선규”로, 「새마을금고정관(예)」는 “정관”으로,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예)」는 “규약”으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규
'24. 9. 1.(일)까지	해당 금고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관할위원회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규§3②
9. 21.(토)	관할위원회에 위탁신청한 것으로 봄	위탁단체	임기만료일전 180일	법§8
'24. 9. 21.(토)부터 '25. 3. 5.(수)까지	기부행위제한	후보자(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위탁신청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1회 이사장선거에만 적용	법§34 법§35 부칙<23. 8. 8.> 제2조
'24. 9. 21.(토)부터 '25. 3. 5.(수)까지	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관할위원회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
9. 22.(일)까지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규§3②
9. 26.(목)까지	선거관리경비 등 금액·납부기한·계좌번호 통보 <중앙회 및 위탁단체에>	중앙위원회 관할위원회	납부기한전 5일까지	규§41② 규§45③
10. 1.(화)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계도·홍보, 단속·조사, 재해보상 준비금) <관할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 납부(포상금 부담금액) <중앙위원회에>	위탁단체 중앙회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법§78①·② 규§45③
12. 17.(화)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준비·관리경비) 통보 <위탁단체에>	관할위원회	납부기한전 5일까지	규§41②
12. 22.(일)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준비·관리경비)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법§78①
12. 22.(일)까지	예비후보자 피선거권 증명서류의 목록 제출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까지	법§24의2 규§11의2②
12. 22.(일)부터	범죄경력(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법§18④
25. 1. 15.(수)까지	해당 금고 회원명부 정비	위탁단체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전 30일까지	법§15④
1. 19.(일)까지	후보자 피선거권 증명서류 등의 목록 제출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까지	법§18②·2·4 규§9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규
1. 20.(월)부터	해당 금고의 임원·직원, 다른 금고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의 사직기한 ※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대상 아님	예비후보자 되려는 사람	예비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정관§39
1. 21.(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법§24의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법§24의2②
	기탁금 납부 <관할위원회에>			규약§23의2②
	예비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규§10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 선임·해임 신고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지체없이	법§24, §24의3 규§11의3
2. 3.(월)까지	위탁선거사무 대행위원회 등 결정·공고·통지 <대행위원회등에>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30일까지	법§11③ 규§6③
	관할위원회가 선거사무 대행을 위하여 지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지정받은 사람	지체없이	규§6④
2. 3.(월)부터 3. 15.(토)까지	투표관리관 위촉·운영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법§40② 규§17①
2. 8.(토)까지	예상선거인수, 선거벽보 첩부수량 및 첩부장소 통보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10일까지	규§12③, §13⑤
2. 13.(목)까지	선거공보·선거벽보 작성수량·제출수량·첩부수량 및 제출장소 공고	관할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5일까지	규§12④, §13⑤
2. 13.(목)	선거일을 공고한 것으로 봄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	법§14⑥
	피선거권 관련 출자좌수, 채무·채납·부도정보, 사업이용실적 기준일	위탁단체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정관§39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 투표방법에 따른 대상선거인 선정	위탁단체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법§41⑤·⑥ 규§20①
	거소투표자, 순회투표자, 인터넷투표자 투표방법 통보 <선거인에게>		지체없이	규§20②
2. 14.(금)부터 2. 18.(화)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위탁단체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총회·대의원회 선출시 선거인명부 등본 포함) 송부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	법§15②·③ 법§53① 규§7③
	거소투표자 명부, 순회투표자 명부, 인터넷투표자 명부 작성·송부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규§20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규
2. 17.(월)	해당 금고의 임원·직원, 다른 금고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 공무원의 사직기한(단, 선출직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고 적용 제외) 및 경업관계 해소기한 ※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대상 아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정관§39
2. 18.(화)부터 2. 19.(수)까지	후보자등록 신청(관할위원회)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범죄경력에 관한 회보서 및 기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한 서류 제출 (관할위원회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등록신청시	법§18②·④
	기탁금 납부 (관할위원회에)			정관§40의8 규약§22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규§10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 선임·해임 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지체없이	법§24, §24의3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위탁단체에)	후보자	후보자등록신청 후	법§30의3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 (상급위원회에), 통지(후보자·위탁단체)	관할위원회	지체없이	법§19②, §21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관할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42②
	피선거권 및 범죄경력 조회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위탁단체의 장에게)	관할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법§18⑤·⑥ 규§9⑤ 새마을금고법 §21①
	후보자사퇴 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20 규§11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탁단체에)	선거권자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16①
	누락·오기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법§16③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신청 (위탁단체에)	후보자	해당 법령 또는 위탁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법§17 규약§17, §61
2. 20.(목)	선거기간개시일			법§13
2. 22.(토)	선거공보(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선거벽보 제출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보자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25① 법§26①
2. 23.(일)	선거인명부 확정	위탁단체	선거일전 10일	법§15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규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총화·대의원회 선출시 선거인명부 등본 포함) 송부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법§15②,③ 법§53① 규§7③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법§15③ 규§7⑤
	2개이상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이중투표방지 포함)			법§41④
	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관할위원회) ※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비교란에 통보 내용 기재	위탁단체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시마다	규§8①
2. 23.(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규§18①
2. 24.(월)까지	선거벽보 첨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및 위탁단체와 협의한 장소)	관할위원회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26②
2. 25.(화)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동봉)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25③ 법§43
	선거공보등의 내용 중 경력 등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관할위원회에)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법§25⑥, §26③ 규§12⑨, §13⑤
	선거공보등의 내용 중 경력 등 허위사실 등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소 입구에 첨부	관할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	법§25⑥·⑦ 법§26③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투표안내문 동봉), 거소 투표용지 미발송시 사유 및 선거일 투표소 투표 통지 (거소투표자에게)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규§21① 공선규§78③
	우편투표함 비치	관할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공선규§80
2. 26.(수)까지	투표용지 모형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7일까지	공선법§152① 공선규§75
2. 28.(금)까지	개표소 공고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포함)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규§25①·②
3. 3.(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규§24①
3. 4.(화)까지	투표소 설비	관할위원회, 투표관리관	선거일 전일까지	규§18②
	개표소 설비	관할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규§25③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규§24①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함 등 인계 (투표관리관에게)	관할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규§22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규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관할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후보자	신고 후 언제든지	공선법§161⑤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관할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후보자		공선법§181②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 작성·통지 (투표관리관에게)	관할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공선법§154③ 공선규§78④
3. 5.(수)	투표 (투표진행, 투표록 작성)	투표관리관	오전 7시부터(협의시각) 오후 5시까지	법§44, §53① 법§49
	투표함 등 송부 (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공선법§170①
	개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작성 등)	관할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법§47 법§49
	개표상황표 작성·송부 (관할위원회에)	대행위원회, 책임사무원	개표상황표 작성 후	법§47④ 규§28
	결선 투표	총회·대의원회 투표관리관	금고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	법§52 법§53①
	투표록, 개표록, 투표 및 개표록 송부 (관할위원회에)	대행위원회 등	지체없이	법§49②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관할위원회	개표록을 송부 받은 때	법§49③·④ 규§29
	투표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관할위원회의 직근상급위원회에)	해당 위탁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	사유발생한 날(투표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함) 부터 5일이내	법§55 규§32①
	투표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 (이의제기자, 해당 관할위원회 통지)	관할위원회의 직근상급위원회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	규§32②
4. 4.(금)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위탁단체에)	관할위원회	선거일후 30일까지	법§78⑦ 규§44②



2025. 3. 5.(수) 실시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사무 일정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